

대학원 의학과 내규

1996.09.01 제정
2012.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3.09.01. 개정
2018.03.01. 개정
2021.03.01. 개정
2021.07.0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관계되는 인사, 교육 및 학사일정, 학위심사 및 학과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본 내규는 대학원 의학과 의 기초의학계, 중개임상연구내과계, 중개임상연구외과계에 적용한다.
- ② 보건학협동과정, 의학통계학협동과정,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전공분야)

- ① 학과별 전공분야는 기초의학계, 중개임상연구내과계, 중개임상연구외과계, 3계로 구분하며, 각 계에 주임교수를 둔다.
- ② 각 계에 속하는 전공은 아래 표와 같다.

계	전 공
기초의학계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분자생물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법의학, 의학교육학, 의인문학교실, 통합의학
중개임상연구외과계	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산부인과학, 비뇨기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마취통증의학 치과학, 재활의학, 응급의학
중개임상연구내과계	내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과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가정의학, 영상의학과학, 방사선종양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제 2 장 대학원 교원인사

제 4 조 (대학원 교수의 임용)

- ① 대학원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정한다.
- ②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비 자연계)에 1편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 및 학사일정

제 5 조 (입시전형)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입시전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6 조 (석·박사과정 입학사정)

석·박사과정 입학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체적 배분은 재적생(在籍生)을 기준으로 기초분야와 임상분야를 4 : 6으로 한다.
- ② 교수 1인당 대학원 지도학생수는 석·박사과정 학생과 휴학자 포함하여 기초분야의 경우 7명 이하로 하고, 임상분야는 교수 1인당 5명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단, 위의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재학생수, 교수 수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교육과정)

① 의학과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은 석·박사과정 구별이 없고,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기초공통과목 12학점(의윤리 및 연구윤리 3학점 필수이수), 전공 12학점 이상 계 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제외한 기초공통과목 15학점(의윤리 및 연구윤리 3학점, 의학공통세미나 3학점은 필수이수), 전공과목 15학점 이상, 계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에서 의윤리 및 연구윤리 수강시 재 수강 할 필요 없음.
3. 석·박사통합과정 교과학점 취득은 기초공통과목 21학점(의윤리 및 연구윤리 3학점, 의학공통세미나 3학점은 필수이수), 전공 27학점 이상, 계 48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4. 기초공통과목 : 기초공통과목은 대학원 요람에 수록된 해당 과목 중 해당 학기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5. 전공과목 : 전공과목은 대학원 요람에 수록된 해당 과목 중 해당 학기에 개설된 전공학과목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타 과 교과목 수강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한 학기에 3학점 이내 수강이 가능하며 기초공통, 전공으로 인정한다.
6. 지도교수 지정과목 : 석,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후 첫학기초에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정과목을 정한다. 그러나 의학과는 학과의 특성상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의생물과학계 재학생은 졸업시점까지 2012학년도 전기에 신설되는 의과학과의 전공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② 각 과정별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응시자격은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이며, 기초공통과목 중 1과목과 전공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 응시자격은 21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이며,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 응시자격은 3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이며,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③ 종합시험 이외에 소정의 어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위심사

제 8 조 (지도위원회 구성)

- ① 시기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 제출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구성 : 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 1명을 포함한 대학원 교수 4 명으로 하되, 적어도 1명은 비전공 학과목담당 교수로 한다.
- ③ 위촉 : 지도교수(지도위원회 위원장)는 3명의 지도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정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단, 교수 1인당 지도위원 학생수는 휴학자를 포함하여 기초분야는 10명, 임상분야는 7명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지도위원의 임무 : 연구계획, 진행, 기타 실험 및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을 공동지도 한다.

제 9 조 (연구계획서 제출)

대학원 학칙 제 41조(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과정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지도위원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작성 : 학위논문의 연구계획서는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방법 및 재료, 연구진행 일정 및 참고문헌의 순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계획서 작성에 따르는 기타사항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작성법” 및 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제출양식에는 예비실험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제출 :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작성하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의 2학기째부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이 가능하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4부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심사 : 연구계획서 심사는 지도위원 3인이 심사를 겸하며, 심사위원(지도위원)은 향후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전 공개 발표시”에도 심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지도위원 3명이 심사하고 심사위원(지도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
 2. 심사평가 :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통하여 시행하며, ‘적합’, ‘수정후 재심사’ 및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만약 연구계획서 심사에서 1인이라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다음 학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사위원 3명중 1명이라도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되면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기일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연구계획서 재심사시 심사위원 3인중 1인이라도 부적합 판정하였을 경우는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3. 연구계획서의 변경 : 연구진행 도중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수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21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 박사학위논문 공개발표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연구계획서 제출 전에 동일한 연구가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 확정 및 출판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인정치 아니한다.

제 10 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 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의 연구결과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단,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하고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4학기부터 공개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공개발표의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였던 동일한 교수 3인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좌장은 의학과 각 계열주임교수가 직접하거나 주임교수가 선정한 전임교원이 진행할 수 있다.
- ④ 연구결과 심사기준은 기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의 일관성 여부,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결과 도출의 합리성 및 발표자의 내용에 대한 숙지도 등을 종합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 2인이상 '적합' 판정을 받아야 다음 학기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심사한다.
- ⑤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은 4학기까지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개발표시의 출석 빈도등을 근거로 의학공통세미나(MED518)의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수강신청은 박사과정은 4학기에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등록생부터 할 수 있다.
- ⑥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에서 지도교수가 참석못하는 경우는 발표할 자격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지도위원) 3인 중 2인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발표가 가능하다.

제 11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용 논문 제출 자격)

-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박사과정은 전공과목 30학점이상, 연구지도 8학점, 평균평점 3.0이상 취득자
(2020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36학점)
 2. 석·박사통합과정은 전공과목 48학점이상, 연구지도 16(12)학점, 평균평점 3.0이상 취득자
(2020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54학점)
 3. 영어 및 제2외국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단, 의학과 의학교육학·의인문학 전공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시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
- 가. 원저 (original article)와,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원저에 준하는 형식을 갖춘 letter를 논문으로 인정한다.
- 나.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독자투고 (letter to editor), 증례 (case report), 논평 (editorial)은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종설 (review article)은 논문으로 인정한다.
- 라. 공동 주저자 인원이 n명인 논문인 경우, 논문 편수를 1/n로 계산하며, 그 합산이 1 이상일 때 논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타 학과 및 교외 기관 소속의 주저자는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마. 재학기간 중 작성된 논문으로 소속기관이 고려대학교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 12 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2조(논문심사위원), 제53조(논문심사판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개발표와 동일한 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한다.(외부심사위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

1. 본교의 대학원 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3회 이상의 논문 및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A, B, C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4/5 이상에서 B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을 때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13 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2인 등 3인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논문 및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A, B, C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에서 B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을 때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5 장 학과관리 위원회

제 14 조 (학과관리 위원회)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2조(학과관리위원회)에 의거하여 6인의 학과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① 학과관리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은 대학원 의학과 학과주임이 하고 위원은 3개 계열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학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학과관리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 ③ 학과관리위원회에 학사관리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학과관리위원회의 임무)

학과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대학원 의학과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 ③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 ④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⑤ 어학시험에 관한 사항
- ⑥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⑦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학생의 입학,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 ⑨ 지도교수의 배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⑩ 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⑪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⑫ 전공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 ⑬ 학위 또는 학과에 관한 제규칙,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 16 조 (교과과정의 개편 및 조정)

- ① 시기 : 교과과정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발의 : 개편 및 조정은 해당 교실에서 교수간의 협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발의한다.
- ③ 절차 : 교육과정에 대한 발의사항은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학장의 인준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품의하여 확정한다. 단, 필요시 전체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7 조 (교과목의 개설)

- ① 매 학기당 개설과목은 교수 1인당 1과목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전공교수가 부족하여 교수 1인이 2과목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의생물과학계열 및 협동과정에 개설되는 과목의 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 ③ 매 학기 개설할 과목의 수강신청 학생수는 과목당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내규는 1996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 10조 ④항은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 9조 ,제 12조①항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3 (시행일) 제4조 ②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 (경과조치) 제 11조 ①항-4, 2009학년도 2학기 입학생 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 8조 ①항, 제 9조 ②항, ③항, 제 10조 ①,③항은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②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②항, 제3조 ①,②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①항 개정]
2.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①항 4호 개정]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①항 개정], [제 3조 ①,②항 개정], [제 7조 ①항 개정],[제 9조 ③항 개정]
[제 10조 ③항 개정] [제 12조 ①항 개정] [제18조, 19조 삭제]
[제 7조 ①항] 개정관련 기존 재학생의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021학년도 3월 이전 입학자)
가. 석사과정 : 기초공통 9학점, 전공 15학점이상 (총 24학점 이상 이수)
나. 박사과정 : 기초공통 12학점(의학공통세미나 3학점 포함), 전공 24학점이상
(총 36학점 이상 이수)
* 기초공통과목 중 의학공통세미나3학점은 필수
다. 석.박사통합과정 : 기초공통 12학점(의학공통세미나 3학점 포함), 전공 42 학점이상
(총 54학점 이상 이수)
* 기초공통과목 중 의학공통세미나3학점은 필수
2. (경과조치)이 개정 내규는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1년 3월 이전 입학자는 석사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2항, 3항 개정, 제9조 3항, 제10조 1항, 2항, 3항, 4항,6항 개정, 제11조 개정]